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16

제출일자 : 1999. 3. 8 .

제출자 : 거창군수

■ 개정사유

- 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5982호),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5호)이 '98.12.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 수출 돈 가공공장 유치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인상함 (1,000원 ⇒ 3,000원) (안 제21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함 (안 제38조제1항제1호)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배 기 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8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0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0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000씨씨 초과	220원

- 자동차세 연납 규정의 신설 (안 제39조제3항)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돼지에 대한 도축세 세율 인하 : 1,000분의 10⇒1,000분의 5(부칙제2항)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4개 조문

■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 지방세일반조례 표준안 (경남도 세정13405~10018('99.1.1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가목의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을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3,000원”으로 하고, 나목의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법인”을 “법인의 세율”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2)중 “골프장”을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배 기 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8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0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0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000씨씨 초과	220원

제39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74조제2항제5호중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서”를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토지 및 법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중 “별장·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장·고급오락장용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2002년 3월 31일까지는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 율
돼 지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세율) ① (생략)</p> <p>1. 개인</p> <p>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p> <p>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p> <p>2. 법인 (표 생략)</p> <p>② (생략)</p> <p>제29조(세율) ① (생략)</p> <p>1. 건축물</p> <p>(1) (생략)</p> <p>(2) <u>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u>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3)·(4) (생략)</p> <p>② (생략)</p> <p>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p> <p>1. 승용자동차</p>	<p>제21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1. <u>개인의 세율</u></p> <p>가. <u>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u> : 3,000원</p> <p>나. <u>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u> : 50,000</p> <p>2. <u>법인의 세율</u> (표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1. 건축물</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 - : - - - - -</p> <p>-</p> <p>(3)·(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1. -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 이하</td> <td>18원</td> <td>800씨씨 이하</td> <td>100원</td> </tr> <tr> <td>1,500씨씨 이하</td> <td>18원</td> <td>1,000씨씨 이하</td> <td>120원</td> </tr> <tr> <td>2,000씨씨 이하</td> <td>19원</td> <td>1,500씨씨 이하</td> <td>160원</td> </tr> <tr> <td>2,500씨씨 이하</td> <td>19원</td> <td>2,000씨씨 이하</td> <td>220원</td> </tr> <tr> <td>2,500씨씨 초과</td> <td>24원</td> <td>2,500씨씨 이하</td> <td>25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씨 이하</td> <td>310원</td> </tr> <tr> <td></td> <td></td> <td>3,000씨씨 초과</td> <td>370원</td> </tr> </tbody> </table>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h>배기량</th> <th>씨씨당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 이하</td> <td>18원</td> <td>800씨씨 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씨씨 이하</td> <td>18원</td> <td>1,000씨씨 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씨씨 이하</td> <td>19원</td> <td>1,500씨씨 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씨씨 이하</td> <td>19원</td> <td>2,000씨씨 이하</td> <td>200원</td> </tr> <tr> <td>2,500씨씨 초과</td> <td>24원</td> <td>2,000씨씨 초과</td> <td>220원</td> </tr> </tbody> </table>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8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0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0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000씨씨 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8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0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0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000씨씨 초과	220원																																																														
<p>2 ~ 6 (생략)</p> <p>②·③ (생략)</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5. <u>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u></p> <p>6. (생략)</p> <p>제75조(세율) ① · ② (생략)</p> <p>③ 제7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생략)</p> <p>2. <u>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u>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p>3.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법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u> - - - - - .</p> <p>6. (현행과 같음)</p> <p>제75조(세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u> : - - - - - .</p> <p>3. (현행과 같음)</p>